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디지털유산승계인 지정〉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726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디지털유산 처리 근거 마련 등	3
※참고사항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21인

나. 발 의 일 : 2026. 2. 10.

다. 회 부 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메신저·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연락처·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제한적으로만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마저도 제공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어 피해사망자를 대리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

가족·친지에게도 이용정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신설).

Ⅲ. 검토의견

1. 디지털유산 처리 근거 마련 등(안 제44조의27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이용자가 디지털유산승계인에게 디지털유산의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하되 디지털유산승계인은 지정된 사실을 일정한 방식으로 사전에 승인하도록 함(안 제44조의27제1항).
-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사망 확인일부터 3년 이내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유산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함(안 제44조의27제2항 및 제3항).
-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사망 확인일부터 3년 이내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디지털유산승계인에 대한 열람·복사의무를 면하도록 함(안 제44조의27제4항)
- 이용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디지털유산승계 관련 사항을 변경·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유산승계인 또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제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승계인 지정·변경·철회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44조의27제5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44조의27(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 및 열람·복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디지털유산”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사망 후 디지털유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망 전에 특정인(이하 “디지털유산승계인”이라 한다)에게 열람·복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유산승계인은 이용자가 지정한 사실을 전자적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사전에 승인하여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출액, 이용자 수(가입자 수), 이용량(트래픽) 등 서비스의 규모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1.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u>

현행	개정안
	<u>스에 기록·저장한 연락처 목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중 이용자가 사망 전 승계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한 항목</u> <u>2.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내에서 이용자가 그 설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정보(이용자의 공개 게시물, 공개 프로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정보로 한정한다)</u> <u>② 디지털유산승계인은 이용자의 사망 사실이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등 공적 서류로 확인된 날(이하 “사망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유산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인확인 및 증빙 절차를 거쳐, 사망 확인일로부터 3년간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제1항 각</u>

현행	개정안
	<u>호의 디지털유산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u> <u>1. 디지털유산은 열람·복사 목적의 제공으로 한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의 지위 또는 계정 자체의 이전을 의미하지 아니한다.</u> <u>2. 디지털유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부분을 삭제·가림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호조치가 곤란한 경우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u> <u>3. 연락처 목록의 경우 일괄 다운로드 등 외부 반출을 제한하거나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④ 디지털유산승계인이 사망 확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디지털유산승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이용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디지털유산승계인, 대상 디지털유산의 범위 또는 열람·복사 권한의 부여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디지털유산승계인 또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변경·철회 방법 및 절차, 디지털유산의 제공 범위와 제한사항, 사망 확인 및 신청 절차 등을 고지하고, 이용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지정·변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승인 및 철회 절차, 사망 확인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본인 확인 방법, 디지털유산의 제공 범위, 제공 방식, 제3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분쟁 발생 시 제공의 보류 또는 제한의 사유와 기준 및 그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고인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 또는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러한 소위 ‘디지털유산’의 승계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가 이용자의 사망을 이유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민법상 상속은 기본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¹⁾, 「민법」 제1005조²⁾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재

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디지털유산의 경우 현행법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디지털유산의 재산적 가치에 따라 민법에 따른 상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재산적 가치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유족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디지털유산 승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 참고로,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에서 고인의 계정 정보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유족과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 발생에 따라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를 도울 수 있도록 디지털유산 및 디지털유산승계인 개념을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하고,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일부 이용정보를 유가족·친지가 복사·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유가족과 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하여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유산승계인 지정 및 열람·복사 권한

1) 지원림, 《민법강의》

2)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여를 통해 유가족의 장례 편의 제고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분쟁 방지 등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 취지에 공감함.

○ 특히, 개정안은 통상 디지털유산과 관련하여 통상 제기되는 문제인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디지털유산의 내용을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저장한 연락처 목록(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과 일반에 공개한 정보에 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열람·복사 권한만을 인정하고 계정 자체의 이전은 금지하는 등 민법상 상속 규정과의 충돌 소지를 완화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신설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³⁾, 개인정보처리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인의 연락처 정보를 디지털유산승계인인 유족에게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임.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 10. (생략)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수범자의 범위 설정이 입법취지 달성을 오히려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 개정안은 불측의 사회적 재난·참사 등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안 제44조의27제1항은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매출액, 이용자 수, 이용량 등 서비스의 규모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시키고 있음.
-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수범자로 정하는 것이 국민의 디지털유산 관련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에 가장 유리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전에 이용자에게 디지털유산승계인 지정 및 지정된 자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두고 있는 점, 그 대상 정보의 범위가 연락처 목록과 공개된 정보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다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디지털유산 관련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둘째,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 여부에 대한 안내 조치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4조의27제5항은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변경·철회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시’로 규정되어 있어 문언상 최초 1회에 관련 사항을 일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상의 의무는 충족되고, 개정안에서 향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디지털유산과 관련된 의사를 재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변경·철회의 경우 최초 계약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확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비로소 이용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 재확인에 대한 문구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문언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4조의27에서 디지털유산승계인은 1인으로 한정되는 것인지, 복수의 승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서는 디지털유산승계인 지정과 지정된 자의 승인

의 두 가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4조의27제5항에서 언제든지 이용자가 지정을 변경·철회할 수 있으며 디지털유산승계인 또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두 행위의 관계가 규정되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지정과 승인이 모두 있어야만 디지털유산에 대한 열람·복사 권한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넷째,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안 제44조의27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디지털유산승계인의 지정·승인 및 철회 절차, 사망 확인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본인확인 방법, 디지털유산의 제공 범위, 제공 방식, 제3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분쟁 발생 시 제공의 보류 또는 제한의 사유와 기준 및 그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디지털유산과 관련하여 대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분쟁 발생 시 제공의 보류 또는 제한’에 대해서는 대강을 규정하지 않은 채로 안 제6항에서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개별 조문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대강은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디지털유산의 제공 범위’는 이미 안 제44조의27제1항에서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유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위임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유산 승계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들이 존재하므로, 개정안에 특별히 규정된 제3자 정보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① 열람·복사 대상과 범위, 제3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 법률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② 이용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침해 우려가 있고, ③ 법령에 규정할 사항과 약관·계약을 통해 해결할 사항 혼재되어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참고사항

- 참고로, 디지털유산 승계와 관련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⁴⁾,
 - 미국은 2014년 연방 차원에서 미국 통일주법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Uniform Fiduciaries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UFADDA)」을 승인하였고, 2015년에는 이를 수정한 「수정된 디지털 자산에 관한 수탁자 접속 통일법(Revised Uniform Fiduciaries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UFADDA)」을 제정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도입 중임.
 - 프랑스는 2016년 10월 제정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Loi n° 2016-1321 du 7 octobre 2016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에서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미리 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음.
 - 또한, 독일 연방대법원은 기존 상속법상 포괄승계 원칙을 적용하여 2018년 페이스북(Facebook) 이용 계약에 따른 계정접속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미국은 디지털유산을 재산 측면에서, 프랑스는 개인정보 측면에서 접근해 관련 법률을 입법했고, 독일은 연방대법원이 디지털유산 또한 전통적 상속법상 포괄승계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판시하여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해석으로써 해결하고 있음.

4) 박소영, ‘고인(故人)의 디지털 정보 처리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34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3.7.

문 의 처
02)6788-5228